

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
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6. 19.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40호로 2024년 5월 31일 김지연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(안 제2조)
- 나. 허가권자(안 제3조)
- 다. 심사위원회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4. 6. 4.~ 6. 8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확대 및 명확히 하였으며,
- 안 제4조(심사위원회)제3항에서는 심사예외 규정에서 “10명 미만의 의원” 문구를 삭제하였는데, 행정안전부 선거위회과 (2019.2.11.)에서 공문으로 보낸 표준안을 비롯하여 서울시 23개 자치구(우리구, 동대문구 제외)에서는 해당 인원제한 규정이 없으며,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식적인 행사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임을 감안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공무출장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
- 우선 안 제2조제2호에서 “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(→참가)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” 해당 조항에서 “개최”를 “참가”로 바꾸었음.
-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의 기준 중 제가목에서는 “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”으로 규정하여, 국제회의의 규모의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를

“개최”가 아닌 “참가”로 사용하고 있으며, 통상적으로 국제회의의 “개최국”은 한 곳, “참여 국가”가 여러 곳이며,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1)G20 정상회의, APEC 2)등의 권위 있는 국제회의들 또한 개최국은 한 곳인 것을 고려할 때, 안 제2조제2호의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조문을 현실화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(국제회의의 종류·규모)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.

1. 국제기구,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가.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
- 나.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
- 다.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
- 2~3. (생략)

- 또한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 역량강화,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, 의원의 관심분야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국외공무출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.
-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은 문헌이나 인터넷 등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및 사업이 실행되는 실제 현장의 분위기, 환경·문화적 요인, 지역 주민의 반응 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해당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, 우리 구 특성과 실정에 맞게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등 의원의 정책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,

1) G20 정상회의·재무장관회의: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

2)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(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):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

- 의원마다 전공 및 관심 분야가 다르므로, 관심 분야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, 습득하는 경험의 양과 질 모두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새로 신설되는 제2조의 각 호는 안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,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단순한 관광 및 외유성 출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안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, 의원들은 안 제15조에 의거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참고 자료

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국제회의의 종류·규모)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. <개정 2020. 11. 10., 2022. 12. 27.>

1. 국제기구,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

가.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

나.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

다.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

2. 삭제 <2022. 12. 27.>

3. 국제기구, 기관,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
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개최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일 것

나. 회의 참가자 수, 외국인 참가자 수 및 회의일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[전문개정 2011. 11. 16.]

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

2.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

3.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

4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5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
6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

제4조(심사위원회)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
2.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
3.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0명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5조(사후관리 등)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